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olume 13, Number 2, June, 2011: pp. 179~203
통상정보연구 제13권 2호 (2011년 6월 27일)

논문투고일자 : 2011. 5. 16
심사(수정)일 : 2011. 6. 11
게재확정일자 : 2011. 6. 16

중·대만 ECFA 체결이 한·중 FTA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f the Impact to Korea-China FTA Negotiation from China-Taiwan ECFA

김선광(Sun-Kwang Kim)
경남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김종훈(Jong-Hun Kim)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교 박사후과정

목 차

Ⅰ. 서 론
Ⅱ. 중·대만 ECFA 체결의 의의
Ⅲ. 한·중 FTA 추진현황 및 주요 쟁점
Ⅳ. 중·대만 ECFA가 한·중 FTA에 주는 시사점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현재, 지역경제통합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두 나라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쌍무적 형태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0년 6월 29일 중국과 대만은 중국 충칭(重慶)에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함에 따라 한·중 FTA 역시 최근 들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한국의 제1위의 교역상대국이고, 2010년 5월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의 제1위의 수출상대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2위의 수입대상국이다. 또한 대만은 對중국 교역에 있어서 한국과 교역구조가 비슷하고 경쟁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2010년 6월에 체결한 중·대만 ECFA는 중국과 한국의 교역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의 국내산업과 중국과의 교역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과 대만이 체결한 ECFA의 배경 및 진행과정과 협상의 핵심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중 FTA에 대해서도 그 경과와 예상쟁점 사항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중·대만 ECFA가 한국의 對중국 교역에 미칠 영향과 한·중 FTA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지역경제통합, ECFA, 중·대만 ECFA, 한·중 FTA, 한·중 교역, 중·대만 교역

* 이 연구결과물은 2011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연구장려금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Ⅰ. 서 론

오늘날 세계경제는 세계화와 지역경제통합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가운데 지역경제통합은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혹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관세동맹(Customs Union),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경제연합(Economic Union) 등 다양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1] 특히 FTA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2] FTA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대표된다. 이는 다자 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이를 예외로서 인정하고 있다. FTA를 규율하는 WTO 협정 하의 규정으로는 '상품분야에 대한 GATT 제24조와 GATT 제24조 해석에 관한 양해', '서비스 분야에 대한 GATS 제5조'가 있다.[3]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세계무역질서의 변화에 소외되지 않고, 또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2010년 6월 29일 중국과 대만은 중국 충칭(重慶)에서 경제협력기본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이하 ECFA[4])을 체결하였다. 같은 해 1월 양측간 첫 실무협의가 개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6개월이라는 협상 기간의 신속함은 여타 동종의 양자간 무역협상과 비교하였을 때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한국 정부 및 각종 언론은 중국과 대만의 ECFA 체결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 이에 따른 조속한 한-중 FTA 체결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제1위의 교역상대국이고, 2010년 5월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의 제1위의 수출상대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2위의 수입대상국이다. 중국과 대만의 ECFA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의 제3위의 수입대상국이 대만이며 2010년 들어 대만으로부터 중국으로의 전년 대비 수입 증가율(66.7%)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율(53.4%)보다 앞서 있으며, ECFA

1) 경제통합 발전 단계와 관련하여 발라사(Balassa)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 관세동맹(Customs Union) → 공동시장(Common Market) → 화폐 및 경제동맹(Monetary & Economic Union) →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 정치통합(Political Integration) 등의 지역협력체를 들어 설명하고 있고(Balassa, 1973 참조), 와이너(Viner)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관세동맹(Customs Union) →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 경제연합(Economic Union)등의 단계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Viner, 1950 참조). 따라서 FTA는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통합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A greement)은 모두 경제통합의 한 형태이지만 지리적인 범위의 개념의 차이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 FTA라 함은 지리적 개념을 초월한 자유무역협정을 지칭한다.

2) 허홍호, 정윤세, "한중 FTA에 대한 양국의 입장", 「경영사학」, 제24집 제4호, 한국경영사학회, 2009. pp.251-252.

3) 전병곤, "중국의 FTA 추진과 대외전략적 함의", 「중국연구」, 제49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10. p.614.

4) 중국은 실제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FTA라는 표현 대신 ECFA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체결을 계기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5]되기 때문이다.[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과 대만이 체결한 ECFA의 배경 및 진행과정과 협상의 핵심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재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한·중 FTA에 대해서도 그 경과와 예상쟁점 사항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또한 한국과 對중국 교역구조가 비슷하면서 경쟁 관계에 있는 대만이 중국과 체결한 ECFA가 한국의 對중국 교역과 산업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중·대만 ECFA가 한국의 對중국 교역에 미칠 영향과 한·중 FTA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진행될 한·중 FTA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인 본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중 · 대만 ECFA 체결의 의의

1. 중·대만 ECFA 경과

지난 2010년 6월 29일 중국해협양안관계협회(海協會)와 대만 해협교류기금회(台湾海基會)의 대표가 중국의 충칭(重慶)에서 해협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海峽兩岸經濟合作框架協議>, 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협정문에 서명함으로 인해서 해당 기본협정을 체결하였다. 대만의 국민당 마잉지우(馬英九) 총통의 집권 이후 관계 개선에 따라 2008년 6월 양안회담을 재개하였다.

이렇게 양안관계가 급진전된 1차적인 원인은 대만 최대 무역상대국이자 투자국인 중국과 관계개선을 통한 대만경제 회복이라는 실용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마잉지우로 대만정권이 교체된 데 있다. 마잉지우 총통은 선거 당시 '양안 공동시장'을 공약으로 내세워 경제적 관계에 중점을 둔 양안관계구축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2008년 12월 중국 후진타오 주석은 통일보다는 양안 평화발전의 기본적인 틀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하고 양안 간 포괄적 경제협정체결이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다.[7]

---

5) 사실상 한국은 2005년이 되어서야 대만을 따돌리고 일본에 이어 중국의 제2위의 수입 대상국이 되었다. 문화일보(2010.7.9)는 朱雲鵬 전 대만 행정원 정무위원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대만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한국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만약 ECFA 서명이 한·중간 FTA 체결 이후에 이뤄진다면 참으로 비참한 일"이라고 보도했듯이 양안간 ECFA는 한중 FTA 추진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6) 윤성욱, 주장환, "한-중 FTA: 한국의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제29집,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0. pp.229-230.

7) 2008년 12월 31일,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告台湾同胞書)」 발표 30주년 기념 좌담회의 후진타오 발언.

2009년 말까지 4차례에 걸쳐 양안회담을 통해 경제 이슈에 관한 12개 협정을 체결하였고, 특히 2009년 12월 제4차 양안회담에서 ECFA 협상 개시에 합의하였다. 이후 3차례의 ECFA 실무협상을 거쳐 제5차 양안회의에서 본 협정문에 서명한 것이다.[8)]

〈표 1〉 ECFA 추진 경과

경과	구체적인 내용
2009. 05. ECFA 논의 개시 합의	대만 국민당 우보슝(吳伯雄) 주석의 베이징 방문, 2009년 하반기 ECFA 체결을 본격 논의하기로 합의
2009. 11. ECFA 공동연구 완료	ECFA가 양자 경제발전에 유리하다는 결론에 도달
2009. 12. 제4차 양안회담	제5차 양안회담에서 ECFA에 서명하기로 결정
2010 .01 .26. 제1차 ECFA 실무협상 (중국 북경)	ECFA 정식 명칭 및 기본 구조, 실무 인력구성 상호 통보, 경제무역 관련 규정에 관한 정보 교류 및 논의
2010. 03. 31. 제2차 ECFA 실무협상 (대만)	조기수확(EHP) 리스트 포함 품목과 서비스 부문의 상호 민감 부분에 대한 고려 원칙에 동의(EHP 리스트에서 중국 농산품 제외, 대만 취약 산업 및 중소기업 보호) 협정 초안에 대한 의견 교환 원산지 규정 분과 협상 개시 결정
2010. 06. 13. 제3차 ECFA 실무협상 (북경)	협정문 초안의 내용과 구성에 대한 합의 (무역과 투자, 경제협력, EHP, 기타 등)
2010. 06. 23. ~ 24. 제5차 양안회담 준비 회의 (북경)	협정 본문과 5개 부속서 최종 검독, 조정
2010. 06. 29. 제5차 양안회담(충칭)	양안 간 ECFA 서명

자료 : 중국 상무부.(http://www.mofcom.gov.cn/ 검색일 : 2011년 4월 17일)

ECFA는 2003년 중국이 홍콩, 마카오와 체결한 경제긴밀화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과 유사한 성격으로 사실상 FTA에 해당된다. 양국은 조기수확프로그램을 통해 ECFA[9)]의 전반적인 틀이 확립되면 기본협정을 우선 체결하고, 그 이후 상품과 서

8) 지만수, 이승신, 여지나, "중국 · 대만 ECF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0 no. 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p.2.

9) 처음에는 CECA라는 명칭이 제안되었으나, 이는 중국과 홍콩 간에 체결된 CEPA를 연상시켜 대만의 홍콩화를 우려하여 ECFA라 명명하였다.

비스 부문의 구체적인 양허내용을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중-ASEAN FTA의 진행과정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10]

2. 중·대만 ECFA 주요 내용

1) 기본 특징

중국과 대만사이에 체결된 ECFA는 추후 본격적인 협상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협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ECFA의 체결이 FTA의 체결이나 완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협정의 체결로서 향후 본 협상의 의제와 일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11]

양국은 ECFA의 가시적인 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주요 공산품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조기수확프로그램(EHP : Early Harvest Program)을 체결하였다. 실제 중국은 ASEAN, 파키스탄과의 FTA에서는 EHP를 활용한 바 있으나 ASEAN의 경우에는 농산물에 한정되었고, 파키스탄의 경우 교역액이 작아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12] 먼저 체결되었던 EHP의 미미한 경제적 효과로 인해 중·대만 ECFA에서는 양국 간의 주요 교역 대상이 되는 공산품들과 일부 서비스 분야를 EHP에 포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증폭시켰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대만의 ECFA는 제4차 양안회담에서 협상의 실시를 합의한 후에 단 6개월 만에 체결하여 이례적으로 짧은 협상으로 기본협정을 마무리 지었다. 이는 중국과 대만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하나의 중국이라는 기본 인식 아래서 정치적 이념은 남겨둔 채 경제적 통합을 이끌어야 한다는 양국의 기본입장의 일치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협정문의 구성

ECFA 협정문은 서언과 5개 장, 16개조, 5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 이어 제2장에서는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제3장에서는 경제협력 등 향후 확대 FTA 협상에서 다루게 될 기본의제를 명시하였으며, 제4장 및 부속서에서는 EHP 관련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

10) 중국과 ASEAN은 2002년 11월 조기 자유화 프로그램을 포함한 기본협정을 우선 체결하여 일부 농수산물에 대하여 관세를 조기 인하하는 조치를 우선 시행하였고, 그 후 2009년 8월까지 약 8년에 걸쳐 별도의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및 투자 협정을 차례대로 체결하였다.

11) 본 협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상품무역(서비스무역, 투자, 경제협력) 협상을 진행하여 조속히 완결하도록 한다.(ECFA 협정문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0조 제1항)

12) 중국은 동아시아 통합에서 일본에 뒤쳐진 ASEAN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2002년 11월 기본협정을 체결하며 일부 농산품에 대한 EHP를 포함시킨 바 있다.(HS 01~08단위 500여 개 품목에 대해 2004년 1월 1일부터 무관세 실시) 또한 중국은 파키스탄과 FTA를 체결하면서 공산품을 포함한 EHP 협정을 2005년 4월 먼저 체결하고, 2006년 11월에 상품 FTA를 체결하였다.(769개 품목에 대해 3년에 걸쳐 무관세, 1,671품목에 대해 관세우대 실시)

기본협정에서 명시한 향후 협상 의제에는 각국 간의 FTA 협상에서 다뤄지는 대부분의 의제들이 망라되어 있어 향후 매우 포괄적인 FTA 협상을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표 2〉 ECFA 협정문의 구성 및 내용

구분		세부사항
서언		ECFA를 통한 경제 관계 제도화의 장기 전망과 기본 원칙
제1장	총칙	목표, 협력 조치
제2장	무역 및 투자	상품무역: 관세양허, 원산지 규정, 비관세조치(TBT, SPS 등), 무역 구제 조치 등 포함
		서비스무역: 무역 제한 조치 축소, 자유화 범위 확대, 협력 증진 등
		투자: 투자보장 기제 구축, 투명성 제도, 투자 제한 축소, 투자 원활화
제3장	경제협력	지적재산권 보호 및 협력, 금융 협력, 세관업무 협력, 전자상거래 협력, 산업 협력, 중소기업 협력 등
제4장	조기자유화 (EHP)	상품무역 조기자유화, 서비스무역 조기자유화
제5장	기타	분쟁해결, 집행기구, 수정, 발효 및 종결 조항 등
부속서 1		상품무역 EHP 리스트와 관세율
부속서 2		상품무역 EHP 임시 원산지 규정
부속서 3		상품무역 EHP 적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부속서 4		서비스무역 EHP 개방 양허
부속서 5		서비스무역 EHP의 서비스 공급자 정의

자료 : ECFA 협정문

3) 조기수확 프로그램

ECFA 협정문은 간단한 형태이나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양자 간 교역의 대부분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FTA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FTA와 같은 국제통상협정은 협정문과 시장개방 분야를 명기한 양허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ECFA와 같은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은 협정의 주요 권리 의무만 명기하고 구체적 시장개방 리스트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상례인데, 중·대만 간 ECFA는 기본협정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대만 측 요구로 조기수확 프로그램이라는 선 개방 품목이 협상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ECFA의 핵심은 바로 이 조기수확리스트에 있다.

〈표 3〉 조기수확 분야의 경제적 효과 비교

분야	대만측 효과	중국측 효과
조기수확 품목수(HS 기준)	539개	267개
금액(2009년 수출액 기준)	138억 3,800만 달러	28억 5,800만 달러
각국 수출총액 대비 비율(%)	16.1%	19.5%
관세율	중국이 실질 및 평균관세 10 ~ 15% 삭감	대만이 실질 및 평균관세 2.5% ~ 5% 삭감

자료 : 대만 경제부 공업국, 「ECFA 貨品及服務貿易早期收穫計畫」, 2010.

이 조기수확 리스트는 중국보다는 대만 쪽에 더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양안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경제적으로 양보를 한 협상으로 평가된다.[13] 그래서 양측 개방항목도 대만은 267개 상품을 개방한 반면, 중국은 2배가 넘는 539개 상품을 개방하는 비대칭적 형태를 이루고 있다.

〈표 4〉 중국의 대 대만 관세 인하 일정

	2009년 수입세율 (X%)	품목 수	협정세율		
			EHP 발효 1년	EHP 발효 2년	EHP 발효 3년
중국	0<X≤5	72	0		
	5<X≤15	437	5	0	
	X>15	30	10	5	0
대만	0<X≤2.5	67	0		
	2.5<X≤7.5	186	2.5	0	
	X>7.5	14	5	2.5	0

자료 : 張晟, "兩岸經貿合作發展的新高度 : 海峽兩岸經濟合作框架協議 (ECFA), 「 理論月刊」, 第3期, 理論月刊, 2011. p.135.

중국이 대만에게 개방을 약속한 분야를 보면, 상품분야에서는 석유화학(88개), 기계(107개), 방직(136개), 농산품(18개), 운송공구(50개), 등 총 539개 품목을 3년에 걸쳐 무관세화 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는 2009년 기준 대만으로부터 중국으로 수입되는 금액 중에서 138억 3,000만

13) 周忠菲, "從ECFA看中韓FTA進程", 「中國經貿」, 2010年 11期, 《中國經貿》雜志社, 2010. pp.40-41.

달러에 이르는 금액이며 전체 수입비율의 16.1%를 차지하고 있다.[14] 또한 서비스 분야에서도 보험, 은행, 증권 등 금융서비스, 회계, 영화, 의료서비스, 컴퓨터와 연구개발 서비스 등 11개 분야를 개방하기로 하였다.

〈표 5〉 중국과 대만의 ECFA 협정상 EHP 품목

구분	중국의 대 대만 EHP 품목	대만의 對중국 EHP 품목
상품 EHP 관세인하 품목	총 539개 품목 : 농산품(18), 기계(107), 석유화학(88), 방직(136), 자동차부품(50), 기타(140)	총 267개 품목 : 석유화학(42), 기계(69), 방직(22), 자동차부품(17), 기타(117)

자료 : ECFA 협정문 및 부속서

Ⅲ. 한·중 FTA 추진현황 및 주요 쟁점

1. 한·중 FTA의 추진현황

한중 양국의 FTA 논의는 200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정상회의에서 중국 주룽지 총리가 한·중 FTA의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중국의 국무원 발전연구중심(DRC : Development Research Center) 내에 FTA 연구팀을 설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2004년 9월 'ASEAN+3 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에서 민간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 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한·중 양국은 합의에 기초하여 2005년 3월 20일부터 2006년 11월까지 2년여 기간 동안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F)과 중국의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이 공동연구를 실시하였다. 양국은 공동연구에서 한중간의 무역과 투자현황을 비롯한 무역제도와 정책 그리고 무역확대의 장애요인 등을 분석하였을 뿐 아니라 FTA가 양국에 가져다 줄 경제적 효과, 산업별 영향, 민감한 분야를 도출하였다.[15]

또한 양국은 2006년 11월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개최된 APEC 관료회의 중에 한중 통상장관 회담에서 산관학 공동연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2007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다섯

14) 張晨, 상게논문.

15) 單玉麗, "台湾的大陸政策与后ECFA時代推動兩岸經貿合作之策略", 「綜合競爭力」, 2011年 第1期, 福建省人民政府發展研究中心, p.36.

차례에 걸친 산·관·학 공동연구를 실시하였다.[16]

〈표 6〉 한·중 FTA의 논의경과 및 내용

일자	내용
2002. 11. (캄보디아 프놈펜)	주룽지 총리,한·중 FTA 공동연구 제의, 중국 국무원 발전 연구 중심(DRC)내에 TF팀 설치
2004. 09. (베트남 하노이)	ASEAN+3 한·중 통상 장관 회담에서 민간 공동 연구 합의
2005.	한·중 양국 공동 연구 개시, 1년차 연구 수행
2006.	민간 공동 연구 2년차 수행 후 11월 연구 종료, 한·중 FTA에 대한 보다 심층적,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산·관·학 공동 연구 필요성을 제시
2006. 11. 17. (베트남 하노이)	한·중 통상장관 회담에서 한·중 FTA산·관·학 공동연구를 2007년부터 개시키로 합의
2007. 03. 22. - 23. (북경)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개최
2007. 07. 03. - 04. (서울)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2차 회의 개최, 상품보고서 초안 논의
2007. 10. 23. - 25. (위해)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3차 회의 개최
2008. 02. 18. - 20. (제주)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4차 회의 개최
2008. 06. 11. - 13. (북경)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5차 회의 개최
2010. 02. (북경)	한·중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 수석대표간 협의
2010. 05. 23. (서울)	한·중 통상장관 회담시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방안 논의
2010. 05. 28. (서울)	양국 정상 임석하에 양국 통상장관,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관련 양해각서 서명
2010. 09. 28. - 29. (북경)	한·중 FTA 정부간 사전협의 제1차 회의 개최(북경)

자료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http://www.fta.or.kr 검색일 : 2011년 4월 18일)

2010년 5월 28일에 양국간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연구 종료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0년 9월부터 민감 분야에 대한 비공식 접촉이 시작되면서 2011년 6월 이후에 협상이 개시될 전망이다.[17]

16) 劉賽力, "孕育中的中韓自由貿易區," 「國際問題研究」, 第1期, 中國國際問題研究所, 2008. pp.15-20.
17) 최용민, "한·중간 무역구조의 특징과 FTA 협상시 고려요인", 「Trade Focus」,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0. p.3.

2. 한·중 FTA의 주요 쟁점

1) 상품 분야

2011년 현재까지 중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18] 중에서 한국 만큼 제조업이 강세인 나라는 없었다. 2010년 대만과 체결한 ECFA가 제조업이 강한 나라와 체결한 유일한 형태의 FTA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세계 최대의 제조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의 경우 아직까지는 공산품과 관련한 시장개방에 대해서 FTA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상품양허협상의 경우 가공무역이 중심이 되고 있는 양국 간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의 경우 관세 삭감으로 인해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 EU, 일본 등 경쟁국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자동차 기업은 이미 중국에 대규모 현지 공장을 설립하여 양산 중이므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일부 차종에만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파악된다.[19]

전자산업분야를 보면 중국은 전기전자부문에서 평균관세율 8.8%로 한국의 5.38% 보다 높은 수준이나 가중평균관세율은 오히려 한국이 높은 것[20]으로 알려져 있다.[21] 부품의 경우 반도체 등의 정보기술협정(ITA) 대상 품목의 경우 이미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한중 FTA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ITA 협정의 대상이 아닌 음향기기 부품 등 일부 고관세 전자부품은 현지의 한국공장으로 수출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22]

석유화학 부문에서는 양국의 평균 관세율은 모두 5% 이상으로 비교적 높다. 따라서 양측이 석유화학 분야에서 관세를 철폐할 경우 교역증대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對중국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에서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한중 FTA는 對중국 수출증대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3]

철강 산업과 관련하여 현재 중국의 생산량은 5억7,000만 톤으로 세계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며 세계 1위 철강 생산국 자리를 10년 이상 굳건히 지켜오고 있으며 양국은 상호 최대 철

18) 2011년 4월 30일 현재 중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는 홍콩, 마카오, ASEAN, 파키스탄, 칠레, 뉴질랜드, 싱가폴, 페루, 코스타리카의 국가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이 전부이다. (자료: 중국 상무부, http://fta.mofcom.gov.cn/index.shtml)

19) 이항구, 김성우, 최상미, "속도 붙은 한·중 FTA 논의 쟁점은? : 자동차, 철강, 전자분야 실익 예상" 「친디아저널」, vol. 47, 포스코경영연구소, 2010. pp.54-55.

20) 이는 한국의 對중국 수출이 가공무역을 위한 전기전자부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국의 관세 환급과 낮은 실질관세율로 인한 것이다.

21) 양평섭, 이장규, 박현정, 여지나, 배승빈, 조현준,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KIEP 연구보고서」 제7-08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pp.122-124.

22) 이항구 外 2인. 상게논문, p.57.

23) 한국의 對중국 수출 석유화학제품에서 54.6%가 내수시장 대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평섭 外 5인, 전게보고서, pp.130-131.)

강교역국[24]으로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다만 한국의 對중국 철강수출의 대부분이 가공무역으로 인한 관세 환급 대상이 다수임을 감안할 때 실제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는 예상만큼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25]

2) 농업 분야

농업분야는 한중 FTA 협상개시 및 타결에 있어 한국의 최대 난제로 손꼽힌다.[26] 한국이 비록 농업대국인 아세안, 미국, EU, 칠레 등과 FTA를 체결하였으나 미국과 EU의 경우 축산물, 낙농품, 오렌지나 포도와 같은 과일류가 주요 쟁점이었다면 한중 FTA는 과일류나 축산품 외에도 농가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곡물류, 채소나 화훼류 심지어 한약재나 특용작물까지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가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중국의 동북3성과 산둥성의 기후, 지리적 위치 및 농업생산 방식도 한국과 유사하여 한국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농산물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리적인 근접성으로 인해 중국의 대 한국 농산품 수출은 다른 나라와 달리 신선농산물이 많다.[27]

지금까지 한국의 기존 FTA에서도 쌀의 경우 모두 양허가 제외되었고 나머지 품목도 상대국별로 다양하게 양허가 되었다. 예를 들어 관세 철폐기간을 장기화, 계절관세부과, DDA 타결 후 재협상을 약속[28] 또는 세이프가드제도의 도입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한중 FTA 협상 전과 협상 후에서도 농업분야에 대한 양허여부 및 범위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며 이 외에 사후적 조치로서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29] 등을 한국이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3) 원산지 분야

원산지규정이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국적을 결정하고 특혜 또는 비특혜의 일정한 무역조치의 부과를 결정하는 각종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국제법규, 법률, 행정결정 등 각종 조치

24) 2009년 기준 한국의 對중국 철강수출량은 506만톤 對중국 수입량은 1,000만톤 규모이다.(김성우 外 2인, 전게논문, pp.54-55.)

25) 양평섭 外 5인, 전게보고서, p.115.

26) 車松虎, "中韓FTA爭論的焦点分析", 「消費導刊」, 2010年 5期, 中國輕工業聯合會, 2010. p.27.

27) 반대로 한국의 對중국 수출은 대부분 라면, 커피류 등 가공식품으로서 이는 타 국가에서 수입한 원료를 사용한 식품기업에 의한 수출로서 농촌이나 농민의 소득증대와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된다.

28) 한·칠레 FTA에서 양측은 전체 농산품의 27%, HS 10단위에 이르는 품목을 DDA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29) 한국이 기체결한 FTA 가운데 한·칠레 FTA(제12조)와 한·미 FTA에서는 농업세이프가드 제3조의 도입을 합의한 사례가 있다.

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원산지규정은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FTA등에서 특정 국가 간에 주로 특혜부여를 목적으로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을 말한다. 이에 반해 비특혜원산지규정은 특혜 이외의 원산지 인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 차별적 적용 없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산지규정을 지칭한다.[30]

따라서 FTA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특혜원산지규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산지규정에 대한 협상은 FTA 상품협상에 있어서 상품양허협상과 함께 핵심적 분야로 거론된다. 왜냐하면 원산지로 인정받느냐 여부에 따라 FTA 특혜관세 적용대상에 포함되느냐가 결정되고 이 에 따라 기업이 수출과 현지생산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원산지분야 예상 쟁점을 살펴보면 먼저 완전 생산기준과 관련해서 수산품의 원산지 기준에 대해 논쟁이 예상 된다 일반적으로 수산업의 경쟁력이 있는 국가는 완화된 원산지기준을 주장하겠지만 경쟁력이 비교열위에 있는 경우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주장할 것이다. 수산업분야에서 양국 간 경쟁력은 중국이 비교우위에 있음은 명확하다. 따라서 중국이 완화된 기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반해 한국은 기국요건과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31]

4) 서비스 분야

한국과 중국의 FTA 서비스 분야 협상에서는 미래최혜국대우[32](이하 미래MFN) 인정 여부, 인력이동 및 투자자유화가 핵심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며 이 외에 서비스 투자협정 모델을 둘러싼 논쟁[33], 제도적 투명성 완화, 관심 분야에 대한 양허협상이 이슈로 예상된다.

GATS에서 이와 같은 최혜국대우에 대한 예외를 넓게 인정[34]하고 있기에 한국의 경우 한

30) 이서영, "FTA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연구-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연구」, 제2권 제1호, (사)한국무역연구원, 2006. p.129.

31) 최문, 윤기관, "한·중 FTA 원산지기준의 최적 합의안 도출을 위한 양국 기존 FTA 협정의 원산지 부문 비교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1호, 국제지역연구센터, 2009. pp.391-416.

32) 한·중 FTA에서 미래 MFN은 향후 중국이 다른 나라와 FTA 서비스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한·중 FTA에서 개방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로 개방할 경우 한국에게 자동으로 그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의미한다.

33) 서비스분야 개방방식에서 한국이 Negative 방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나 중국은 GATS와 같은 Positive 방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FTA에서 한국은 미국, 싱가포르, 칠레 등과는 Negative 방식을, EU, 인도, ASEANFT과는 Positive 방식을 사용하는 등 다양하게 체결한 전례가 있으나 중국은 Positive 방식 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국의 유연성 발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Negative는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안에 기재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방식이고 Positive는 개방할 분야만 양허안에 기재하고 나머지는 개방하지 않는 방식을 지칭하는데 Negative 방식이 좀 더 개방친화적인 것으로 평가 된다.

34) 김경배, "FTA 투자규정에 있어서 최혜국대우 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중재판정 사례연구", 「중재연구」, 제20권 제1

미 FTA 이후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적 판단 하에 미래 MFN 원칙을 추진[35]하고 있고 중국과 FTA에서 급성장하는 서비스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동 규정을 협정문에 명기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에서 중국은 광범위한 전문 인력 이동과 함께 전문 인력 이동에 필수적인 전문직 자격증의 상호인정의 추진도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은 좁은 국토에 높은 인구밀도로 인하여 인력이동 개방에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다만 최근 한·인도 CEPA 협상에서 제한적 범위 하에서 우수인력 유치를 허용하는 입장으로 전환하여 최초로 독립전문가(IP: Independent Professional)를 제한적으로 개방[36]한 바가 있어 중국이 정치적 배경이 강한 중·뉴 FTA에서 합의한 유래가 드문 일시고용입국[37]과 유사한 주장을 할 시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인력이동과 함께 전문직 자격증의 상호인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도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경우 건설이나 엔지니어링 등 우리나라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자격증 상호인정을 주로 선진국과 협상에서 적극적 태도[38]를 보인바 있다. 그러나 개도국과의 협상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개도국의 전문직 자격증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국내 이해단체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으로 인해 국내업체가 입을 피해를 언급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국내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전반적인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왔기에 중국과도 예외가 아닐 수 없다.

분야별 양허협상은 상대적으로 개방수준이 높은 한국이 관심분야에서 시장개방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면 중국이 이에 대응하는 수순이 예상된다. 다만 한국도 중국이 요구하는 분야를 수용하기 쉽지 않은 분야가 많으므로 협상 자체는 일방적 양상보다는 1~2개 분야 핵심 이슈에서 주고받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추세에 따라 최근 크게 확대되고 있는 중국자금의 국내 유치 필요성 증대, 글로벌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환리스크헤지를 위한 중국의 위안화의 국제화 전략 활용 필요성 증대 등의 요인을 감안할 때 적극적 금융서비스 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39]

호, 한국중재학회, 2010. p.7.

35) 한·미 FTA 이전 FTA 협정에서는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서비스협상에서 미래 MFN을 규정하지 않았다.

36) 한국은 한인도 CEPA 협상에서 최초로 독립전문가 형태로 제한적 요건 하에서 개방하여 인도의 IT, 엔지니어 등 전문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독립전문가는 각주 130의 계약서비스 전문가와 유사하나 다만 법인 소속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계약서비스 공급자가 법인인 종합병원 소속 의사라면 독립전문가는 개인병원의사에 해당되며 상대국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 공급을 위해 출입국하는 것을 가리킨다.

37) WTO GATS의 인력이 동 부속서나 대부분 FTA 인력이 동양허는 원칙적으로 상대국의 노동시장에 접근하는 노동인력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력이동이 불법체류를 통해 주로 선진국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존재한다.

38) 한·미 FTA에서 한국은 전문직자격증 상호인정을 위한 부속서 작성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5) 지적재산권 분야

한 국가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의 향상이 새로운 전 세계적 체제에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확약을 담고 있는 지역무역협정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1980년대에 미국이 양자 간 투자협정들을 협상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양자 간 투자협정들에서의 핵심요소는 당사국들이 해외직접투자에 내재하고 있는 자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제도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양자 간 투자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포함하여 미국과 EU의 압력은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개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40]

현재 한국과 중국은 관련 지적재산권 관련 논의는 여러 차례 있어 왔지만 그에 따른 실질적인 협정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중국은 저작물 대부분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시장의 특수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한 점은 심각하게 대두된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문제는 한·중간 FTA 체결을 통한 한국의 강력한 요구가 필요하다. 물론 그 효과가 미미할 지라도 한·중간 지적재산권 협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으로써 한·중 FTA에서 지적재산권 문제를 명문화하여야 한다.

Ⅳ. 중·대만 ECFA가 한·중 FTA에 주는 시사점

1. 한국, 대만의 對중국 교역현황

1) 한국의 對중국 교역현황

對중국 무역액이 1992년 수교이후 급속히 늘어나면서 한국의 전체 무역액 증가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수교이후 2009년까지 對중국 수출과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2.7%와 17.1%에 달해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의 수출(9.6%)과 수입증가율(8.4%)을 크게 추월하였다.

2003년부터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되었으며 2006년부터 제1위 교역국으로 변모하

39) 이치훈, "최근 한·중 FTA 환경변화 및 금융협력 가능성 점검", 「Issue Analysis」, 국제금융센터, 2010. pp.5-7.

40) 예컨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흔히 슈퍼 제203조를 동반한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서 한국, 중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대만, 태국은 이전보다 강한 지적재산권 법안들을 도입하게 되었다. EU의 협력과 지원은 이집트와 터키에서의 지적재산권을 강화시켰다.

였다. 2007년부터는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제1위 수입국이 되었으며, 제1위의 무역흑자국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2010년 기준 중국의 제4위 수출국이자, 제2위의 수입국이다.

〈표 7〉 한·중 교역 현황(2005년~2010년)

(단위 : 백만 달러)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출	61,915	69,459	81,985	91,389	86,703	116,838
수입	38,648	48,557	63,028	76,930	54,246	71,574
무역수지	23,267	20,903	18,957	14,459	32,457	45,264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한국과 중국의 교역 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은 중간재와 부품 등 고부가가치 위주의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으로부터는 제조업 완제품 등 저부가가치 위주의 제품을 수입함으로써 중국과 수직적 분업관계를 이루고 있다. 즉, 양국 간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이 높고 한국의 對중국 가공무역으로 인해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면 한국의 대중수출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의 對중국 수출의 70%가 중간재와 부품소재에 집중되어 있고 일반소비재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41]

교역 품목별로 본다면 수교 직후에는 철강이 수출을 주도했으나 최근에는 IT제품이 주도하고 있으며 3대 IT제품(LCD, 반도체, 휴대폰)의 수출액이 300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對중국 전체 수출액의 33.0%를 차지하고 있다.[42]

2) 대만의 對중국 교역현황

중국과 대만 간의 교역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그 증가율은 2004년 이후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총 교역규모는 1999년 약 241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1,292억 달러로 10년간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다소 감소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2010년에는 전례에서 볼 수 없었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41) 최원기, '한·중 FTA추진배경과 전망', 「국제통상연구」, 제81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08. p.38
42)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stat.kita.net/ 검색일 : 2011년 4월 20일).

대만의 對중국 수입증가율은 2004년 50.%까지 증가하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는 13.2% 하락하였고, 수입증가율도 같은 기간 31.2%에서 15.9%로 감소하였다.

〈표 8〉 중·대만 교역 현황(2005년~2010년)

(단위 : 백만 달러)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출	74,655	87,141	100,986	103,325	85,706	115,645
수입	16,559	20,740	23,480	25,886	20,466	29,642
무역수지	58,096	66,674	77,488	77,459	65,240	86,003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양국 간 무역의존도 역시 크게 확대되었으나, 최근에는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 기준, 대만은 일본, 한국에 이어 중국의 3번째 수입시장이자 11번째 수출시장이며, 중국은 일본에 이어 대만의 2번째 수입시장이자 최대 수출시장이다. 특히 중국에 대한 대만의 무역의존도가 크게 확대되어 對중국 수출이 대만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 17.2%에서 2009년 26.6%로 증가하였고 수입비중도 같은 기간 4.1%에서 14%로 크게 증가하였다.[43]

〈표 9〉 중국의 중 교역대상국(2010년)

(단위 : 백만 달러, %)

주요 수출대상국				주요 수입대상국			
순위	국가	수출액	비중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1	미국	283,184	18.0	1	일본	176,304	12.8
2	홍콩	218,205	13.8	2	한국	138,023	10.0
3	일본	120,262	7.6	3	대만	115,645	8.4
4	한국	68,811	4.4	4	중국1)	106,778	7.8
5	독일	68,069	4.3	5	미국	101,310	7.4
6	네델란드	49,711	3.2	6	독일	74,378	5.4
7	인도	40,879	2.6	7	호주	59,698	4.3
8	영국	38,776	2.5	8	말레이시아	50,375	3.7

43) 대만 해관(http://www.customs.gov.tw/ 검색일 : 2011년 4월 20일).

주요 수출대상국				주요 수입대상국			
순위	국가	수출액	비중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9	브라질	38,038	2.8
11	대만	29,642	1.9	10	태국	33,201	2.4

주 : 1) 중국의 수출입에 중국이 상대국에 표기되는 부분은, 중국의 경우엔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이 되는 경우 상대국을 중국으로 집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홍콩 을 경유하게 되면 중국에선 수입국을 중국으로 표기한다.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 ECFA가 한국의 對중국 교역에 미칠 영향

ECFA 조기수확리스트에서 대만 측 품목은 주로 중·아세안 FTA가 2010년 1월 1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대만기업의 피해 품목 위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 품목에서는 한국과의 경쟁품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학자가 정량적 모델링(Quantitative Modeling) 방식으로 평가한 현재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타이완 GDP가 4.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44] 이는 ECFA의 후속 4개 협상을 평가에 포함된 것이며 ECFA가 향후 10년 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는 가정을 통해 얻은 수치이다.

먼저 한국과 대만의 중국시장 점유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ECFA가 체결된 2009년 기준 10.2%와 8.6%로 2005년 이후 한국이 대만을 소폭 앞서고 있다.[45]

〈표 10〉 한국, 대만의 중국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국	10.3	9.6	9.7	10.4	11.1	11.6	11.3	10.9	9.9	10.2
대만	11.3	11.2	12.9	11.9	11.5	11.3	11	10.6	9.1	8.6

자료 : 중국해관 통계.

44) Dani e l H. Ro s en and Zhi Wang, "Deepening China-Taiwan Relations through the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Policy Brief」, No. P B 1 0 - 1 6,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0. p.2.

45) 2009년 기준 주요국의 중국 시장 점유율 : 1위 일본(13.1%), 2위 한국(10.2%), 3위 대만(8.6%), 4위 미국(7.7%), 5위 독일(5.6%)(자료 : 중국해관통계 http://www.chinacustomsstat.com 검색일 : 2011년 4월 25일)

한국과 대만의 對중국 수출의 상위 100개 품목 중 81개가 상호 중복되는 품목이다. 중국 무역 통계의 최하위 단계인 HS 8단위 기준 한국과 대만의 대중 수출 상위 100개 품목에서 상호 중복되는 품목이 81개이며, 이들 품목은 한국의 對중국 전체 수출액[46]의 7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한·대만 간 수출 구조가 유사하다.

대만의 경우도 한국과 중복되는 81개 품목의 對중국 수출 비중이 70.2%로 한국과 비슷한 상황으로 조기자유화 539개 품목 중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과 중복되는 품목은 494개로서 ECFA가 체결된 2009년 기준 우리나라 對중국 수출액의 17.9%(182억 6,200만 달러)에 해당된다.[47]

〈표 11〉 대만과 한국의 EHP 주요 품목 대중 수출 비중 비교

구분	주요 품목군	수출 비중1)(%)		품목별 시장 점유율2)(%)	
		대만	한국	대만	한국
	전 품목	100.0	100.0	8.6	10.2
1	석유화학(88개)	6.2	5.2	18.1(87개)3)	18.0(87개)
2	전기기기·부품(41개)	1.4	3.4	5.8(38개)	16.1(40개)
3	기계(100개)	1.2	1.2	5.0(95개)	6.1(91개)
4	섬유·방직·의류(133개)	2.2	1.4	21.0(132개)	16.4(129개)
5	철강(22개)	1.3	1.8	15.0(22개)	24.8(22개)
6	특수용도 차량·오토바이 부품(47개)	0.2	0.8	2.5(29개)	14.3(38개)
7	동과 그 제품(18개)	1.9	1.0	33.2(18개)	19.7(18개)
8	석유 제품(4개)	0.6	2.0	11.2(4개)	42.3(4개)
9	광학기기·부품(6개)	0.2	0.3	6.0(6개)	12.8(6개)
10	농산품(18개)	0.02	0.03	0.9(17개)	1.9(8개)

주 : 1. 수출 비중은 각국의 전체 對중국 수출에서 해당 품목군이 차지하는 비중임.
2. 품목별 시장 점유율은 해당 품목군의 중국 전체 수입시장에서 각국의 품목군이 차지하는 비중, 즉 해당 품목군의 중국 시장 점유율을 의미함.
3. ( ) 안의 수치는 EHP 대상 품목 개수임.

자료 : 중국 해관통계

46) 중국해관 통계 기준으로 본 2009년 한국의 對중국 수출총액(중국의 대한국 수입)은 1,021억 2,500만 달러이다.

47) 494개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중국해관 수입통계(2009년 기준)를 천 달러 단위로 계산한 것임. 그 결과 해당 품목은 496개로 2개 품목의 오차가 있었다. 또한, 천 달러가 아닌 1달러 기준으로 중복 품목을 계산할 경우 505개 품목에 해당(183억 7,917만 달러)되며, 이는 우리나라 對중국 수출액의 18%를 차지한다.

중국과 대만의 ECFA 체결로 일부품목에서는 차이완의 경쟁기업 대비하여 한국기업의 가격경쟁력 하락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IT 산업의 경우 이미 ITA(IT Agreement)[48] 적용과 상당히 진척된 현지법인 설립 등으로 직적접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49] 석유화학이나 기계 등은 ECFA 발효 시 가격경쟁력이 향상된 대만기업과의 경쟁 시에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과 일반기계는 중간 정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철강은 금번 조기수확품목에 시장이 작은 품목위주로 일부 포함되어 있어 단기적 영향은 약하나 추가개방 요구 시에는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일반기계는 관세율이 10%대로 높아 무관세화의 실익이 크고 대만이 산업기반을 갖춘 공작기계 등 일부품목 중심으로 영향력이 예상되고 있다.[50]

〈표 12〉 중·대만 ECFA의 주요 산업에 대한 영향

	잠식가능성2) 低	잠식가능성 中	잠식가능성 高
중요도1) 高	디스플레이	-	석유화학3)
중요도 中	철강(단기), 자동차 부품, 반도체, 휴대폰, 가전	철강(장기), 일반기계	-
중요도 低	자동차, 조선, 해운	-	-

주 : 1. 중요도는 중국수출 비중이 30% 이상이면 높음, 10% 이상 30% 미만은 보통, 10% 미만은 낮음 으로 구분.

2. 잠식가능성은 중국시장에 대한 대만의 잠식가능성

3. 석유화학은 추가개방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 잠식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자료 : 산업은행, "중국 · 대만 ECFA 체결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슈분석」, 산은경제 연구소, 2010. p.2.

48)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 19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정보기술 제품에 관한 국제 협정으로 WTO 회원국 간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전기통신제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 목적이다. 1996년 12월 한국, 대만, 일본 등 29개국이 참가하였으며 현재는 중국을 포함한 50여 개국이 협정에 의해 무관세화를 이행하고 있다.

49) 권혁재, "중국-대만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의 주요내용과 대응방향", 「경제포커스」, 300호, 삼성경제연구소, 2010. p.10.

50) 정대철, "중국-대만 ECFA가 경남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 「Issue Paper」, 제2010-40호, 경남발전연구원, 2010. p.14.

3.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ECFA의 체결은 실제 한국과 교역구조가 비슷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이 중국 시장을 먼저 선점하고 경쟁력을 갖춘데 있어서는 한국에게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이에 대해 먼저 한국은 세분화된 품목별 분석이 필요하단. 산업별 영향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품목별로 중국의 관세율, 일반무역의 비중, 대만과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한 품목별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전기 및 기계 산업 분야의 품목들은 품목별 수출액이 작으나 중소기업이 많은 해당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 및 기업 단위의 현황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별로는 EHP 해당 품목이 많고, 수출 규모도 크며, 대만과의 경쟁이 치열한 석유화학 산업에서 가장 광범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PVC, PE, ABS, TPA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은 최종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기본협정 이후의 본 협상 전개 양상에 유의해야 한다. 2010년 체결된 기본협정은 발효 시점에서 6개월 내에 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협력 분야의 본 협상(사실상의 FTA)을 명시하고 있다. 즉, 중·대만 협력 강화는 이번에 체결된 ECFA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며 향후 광범한 분야에서 협력의 강화가 예상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 파악과 영향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대중 투자 동향과 관련한 유의가 필요하다. ECFA를 계기로 중·대만 관계 강화됨으로 인해 한국의 대중 투자는 격감한 반면, 양안(兩岸)관계 개선이 본격화된 2009년 대만의 對중국 투자가 급증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對중국 투자가 對중국 수출의 상당 부분을 이끌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중국 시장에서 대만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서비스 산업 비중에 있어서도 한국의 대중 투자 가운데 은행·증권·병원 서비스 등 11개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 분야 전반에서 대만이 EHP를 통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중·대만 ECFA는 '한·중 FTA 추진의 필요성' 및 '한·중 FTA 추진의 방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국과의 ECFA 체결을 통해 대만은 주요 제조업 국가 중 유일하게 중국의 내수시장에 대한 특혜적인 접근 조건을 확보하였다.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 조건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라는 장기 전략적 관점에서 한·중 FTA 추진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과 대만은 '기본협정', 'EHP' 등 그 형태를 매우 실용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단

기간 협상(6개월), 경제적 효과 실현의 조기화(2011년부터 시행), 향후 협상의 추진동력 확보(대만 내 반대 최소화) 등을 달성하였음에 유의해야 한다. 통상적인 협상 전략으로 한·중 FTA에 임하여 협상 및 비준이 장기화될 경우, 2011년부터 시작된 중·대만 ECFA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될 수 있음다는 것이다.

한·중 FTA에서도 '기본협정' 및 'EHP'의 과감한 활용을 통해 경제적 효과의 조기 극대화를 추구할 필요가 절실해 요구된다. 중·대만 형태의 '선별적' EHP 형태와 아울러 비민감 품목에 대해 양측이 일괄 선제 개방하는 전면적 EHP 도입도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다. 이는 원자바오 총리가 방한 시 한·중 FTA는 "쉬운 것부터 추진하는 게 좋다"라는 언급과도 부합되는 사항이라고 말 할 수 있다.

2011년 6월 이전에 전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만 FTA 협상은 중국이 제조업 강국과 시도하는 사실상 첫 번째 FTA 협상이며 그 상대국의 교역구조 역시도 한국과 유사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한·중 FTA와도 유사한 부분이 많으므로 중국의 입장과 태도를 관찰하여 향후 진행될 한·중 FTA 논의에 참고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진다.

V. 결 론

본 고에서는 중국과 대만이 체결한 ECFA의 배경 및 진행과정과 협상의 핵심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재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한·중 FTA에 대해서도 그 경과와 예상쟁점 사항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과 對중국 교역구조가 비슷하면서 경쟁 관계에 있는 대만이 중국과 체결한 ECFA가 한국의 對중국 교역과 산업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논의가 한·중 FTA에 어떠한 점을 시사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았다.

중·대만 ECFA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양국은 주요 공산품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EHP를 체결하였다. 실제 ECFA는 기본협정 형태로 협정의 주요 권리 의무만 명기하고 구체적 시장개방 리스트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상례인데, 중국·대만 간 ECFA는 기본협정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대만 측 요구로 EHP이라는 선 개방 품목이 협상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ECFA의 핵심은 바로 이 조기수확리스트에 있다. 중국 무역 통계의 최하위 단계인 HS 8단위 기준 한국과 대만의 對중국 수출 상위 100개 품목에서 상호 중복되는 품목이 81개

이며, 이들 품목은 한국의 對중국 전체 수출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한·대만 간 수출구조가 유사하다. 수출경합도에 있어서도 양국 간 경쟁이 2000년 이래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IT 산업의 경우 이미 ITA 적용과 이미 상당히 진척된 현지법인 설립 등으로 직적접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석유화학 산업은 ECFA 발효 시에 가격경쟁력이 향상된 대만기업과의 경쟁으로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산업 역시도 ECFA의 후속협상을 고려한다면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세분화된 품목별 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관세율, 일반무역의 비중, 대만과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한 품목별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기본협정 이후의 본 협상 전개 양상에도 유의해야 한다. 즉 중·대만 협력 강화는 이번에 체결된 ECFA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며 향후 광범한 분야에서 협력의 강화가 예상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 파악과 영향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상품과 더불어 대만의 기술과 중국의 자본이 결합된 차이완 기업의 탄생을 부추기는 대만의 對중국 투자 동향과 서비스 산업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한 ECFA가 한국에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중 FTA의 조기 체결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대만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도 협상 기간을 최소화 하고 '기본협정' 및 'EHP'의 과감한 활용을 통해 경제적 효과의 조기 극대화를 추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통상적인 협상 전략으로 한·중 FTA에 임하여 협상 및 비준이 장기화될 경우, 2011년부터 시작된 중·대만 ECFA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만과의 경쟁에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석유화학과 기계 분야의 품목에서 한국은 서둘러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후 진행될 ECFA의 본협상의 전개 양상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 파악과 영향평가를 통해 한중 FTA 협상의 추진전략을 수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의 일부는 산업은행 등의 연구소에서 제시한 연구자료의 결과를 토대로 분석되었다는 점이 그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중·대만의 ECFA가 한국의 對중국 교역에 대해 미칠 영향과 앞으로 진행된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를 찾을 수가 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과 중국의 FTA 논의를 앞둔 시점에서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보다 나은 개선안이 지속적으로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고의 끝을 맺는다.

참 고 문 헌

권혁재, "중국-대만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의 주요내용과 대응방향", 「경제포커스」, 300호, 삼성경제연구소, 2010.

김경배, "FTA 투자규정에 있어서 최혜국대우 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중재판정 사례연구", 「중재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0.

산업은행, "중국·대만 ECFA 체결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슈분석」, 산은경제연구소, 2010.

양평섭, 이장규, 박현정, 여지나, 배승빈, 조현준,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KIEP 연구보고서」, 제7-08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윤성욱, 주장환, "한-중 FTA: 한국의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제29집,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0.

이서영, "FTA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연구-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연구」, 제2권 제1호, (사)한국무역연구원, 2006.

이치훈, "최근 한·중 FTA 환경변화 및 금융협력 가능성 점검", 「Issue Analysis」, 국제금융센터, 2010.

이항구, 김성우, 최상미, "속도 붙은 한·중 FTA 논의 쟁점은? : 자동차, 철강, 전자분야 실익 예상" 「친디아저널」, vol. 47, 포스코경영연구소, 2010.

전병곤, "중국의 FTA 추진과 대외전략적 함의", 「중국연구」, 제49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10.

정대철, "중국-대만 ECFA가 경남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 「Issue Paper」, 제2010-40호, 경남발전연구원, 2010.

지만수, 이승신, 여지나, "중국·대만 ECF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0 no. 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최문, 윤기관, "한·중 FTA 원산지기준의 최적 합의안 도출을 위한 양국 기존 FTA 협정의 원산지 부문 비교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1호, 국제지역연구센터, 2009.

최용민, "한·중간 무역구조의 특징과 FTA 협상시 고려요인", 「Trade Focus」,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0.

최원기, '한·중 FTA추진배경과 전망', 「국제통상연구」 제81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08.

허홍호, 정윤세, "한중 FTA에 대한 양국의 입장", 「경영사학」, 제24집 제4호, 한국경영사학회,

2009.

Balassa, B., The Theory of Economic Intergration, London: George Alen&Unwin Ltd. 1973.

Dani e l H. Ro s en and Zhi Wang, "Deepening China-Taiwan Relations through the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Policy Brief」, No. P B 1 0 - 1 6,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0. p.2.

Viner, J., 1950. The Customs Union Issue. London: Stevens & Sons.

車松虎, "中韓FTA爭論的焦点分析", 「消費導刊」, 2010年 5期, 中國輕工業聯合會, 2010.

單玉麗, "台湾的大陸政策与后ECFA時代推動兩岸經貿合作之策略", 「綜合競爭力」, 2011年 第1期, 福建省人民政府發展研究中心, 2011.

劉賽力, "孕育中的中韓自由貿易區," 「國際問題研究」, 第1期, 中國國際問題研究所, 2008.

張晨, "兩岸經貿合作發展的新高度：海峽兩岸經濟合作框架協議 (ECFA), 「 理論月刊」, 第3期, 理論月刊 雜志社, 2011.

周忠菲, "從ECFA看中韓FTA進程", 「中國經貿」, 2010年 11期, 《中國經貿》雜志社, 2010.

台灣 經濟部 工業局, 「ECFA 貨品及服務貿易早期收穫計書」, 2010.

대만 해관(http://www.customs.gov.tw/, 20. April., 2011)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http://www.fta.or.kr, 18. April., 2011)

중국 상무부.(http://www.mofcom.gov.cn/, 17. April., 2011)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stat.kita.net/, 18. April., 2011)

중국해관통계 (http://www.chinacustomsstat.com, 25. April., 2011)

ABSTRACT

An Analysis of the Impact to Korea-China FTA Negotiation from China-Taiwan ECFA

Sun-Kwang Kim* · Jong-Hun Kim**

Currently, the most common form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s FTA (Free Trade Area), which is formed by two countries or more as either a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 A proposed FTA between Korea and China recently has been re-focused after China concluded its 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with Taiwan in June 2010. By May 2010, China was the No.1 export partner to Korea (as a Chinese No.2 import partner). Also, Korea and Taiwan trade structure to China is similar and competitive at the same time. So, China-Taiwan ECFA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As a result, it will hurt Korean industrial production and trade with China.

Therefore, the progress and expected issue of a FTA between Korea and China which is prompting will be analyzed. In this situation, the final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impact on a Korea-China FTA Negotiation from the China-Taiwan ECFA.

Key Words : economic integration, ECFA, China-Taiwan ECFA, Korea-China FTA, Korea-China Trade, China-Taiwan Trade

* Professor, Division of Economics and International Trade, Kyungnam University

** Post Doctor, China National Institute of WTO, The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 China Beijing